

특허청 · 경희대학교 · 국민대학교 · 목원대학교 · 안동대학교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업무협력 약정서

2015. 1. 16



특허청 · 경희대학교 · 국민대학교 · 목원대학교 · 안동대학교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업무협력 약정서

2015. 1. 16



특허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특 허 청

청장 김 영 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 희 대 학 교

총장 조 인 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 민 대 학 교

총장 유 지 수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 원 대 학 교

총장 박 노 권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

안 동 대 학 교

총장 정 형 진

특허청과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목원대학교, 안동대학교(이하 ‘각 대학’)는 지식재산역량을 갖춘 인재의 체계적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이하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특허청은 본 사업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된 각 대학이 ‘15년도부터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및 정책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 각 대학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으로서 ‘15년도부터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 전담교원의 확보, 교육인프라의 구축, 우수 교육모델의 창출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3. 특허청과 각 대학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타 지식재산교육 및 인재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호협력한다.
4. 특허청과 각 대학은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원활한 업무협의를 및 조정을 위하여 각 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약정은 상호합의로 수정될 수 있으며, 효력은 서명한 날부터 3년간 유효하고,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요청이 없으면 2년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5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모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